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고보조금 교부·집행실적의 제출 세분화〉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47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고보조금 교부·집행실적의 제출 세분화(안 제54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성준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3. 25.

다. 회 부 일 : 2025.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일부 중앙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이에 대한 상세한 교부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제출항목을 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회계별·계정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Ⅲ. 검토의견

1. 국고보조금 교부·집행실적의 제출 세분화(안 제54조)

현 행	개 정 안
○ 보조금의 관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 <후단 신설>	○ 보조금의 관리 -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별·회계별·계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현행법¹⁾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 교부·집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회계별·계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112.3조원으로, 총 예산

1) 「국가재정법」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73.3조원 대비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본예산 기준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6~17%대를 유지하는 등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

이러한 국고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은 2025년 본예산 기준 총 93조 6,100억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83.4%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의 규모는 2021년 74조 8,000억원에서 2025년 93조 61,00억원으로 5년간 약 25%가 증가하는 등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1년 76.4%에서 2025년 83.4%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십억원, %)

연도	총 예산(a) (조원)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비중(b/a)
		합계(b)	지자체 교부 (비중)	민간 교부 (비중)	
2021	558.0	9,785 (100.0)	7,480 (76.4)	2,305 (23.6)	17.5
2022	607.6	10,235 (100.0)	7,947 (77.6)	2,288 (22.4)	16.8
2023	638.7	10,233 (100.0)	8,313 (81.2)	1,920 (18.8)	16.0
2024	656.6	10,909 (100.0)	8,927 (81.8)	1,982 (18.2)	16.6
2025	673.3	11,225 (100.0)	9,361 (83.4)	1,864 (16.6)	16.7

주: 각 연도 본예산 기준

자료: e나라도움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의 규모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은 부처별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를 지방자치단체별이나 회계별, 계정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실제 보조금통합포털인 e-나라도움에서도 보조금에 대하여 중앙관서별 및 16대 분야별 보조금 현황만 나타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집행 현황이나 회계, 계정별 현황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이처럼 국가예산에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회계별·계정별로 보조금 교부·집행 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²⁾.

특히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³⁾은 이미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지출을 구분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개정안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회계별·계정별로 구

2) 기획재정부도 개정안에 대하여 보조금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분하여 작성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4조(보조금의 관리) ----- ----- ----- ----- ----- ----- ----- <u>.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별·회계별·계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u>

문 의 처

02)6788-5157